■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45호의3서식] <신설 2021. 10. 14.>

예술·체육요원 교육일 연기신청서

※ 교육연기 신청사유의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2일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
	복무기관		복무분야
	소집일		전화번호
	주소		
연기대상 및 기간	교육구분 [ ]복무기본교육 [ ]직무교육	교육과정명	교육예정기간
	연기신청기간 20 . . . ~ 20 . . .( )일간		
교육연기 신청사유	[ ]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[ ] 본인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(家事)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[ ]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[ ]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( )		

「병역법 시행령」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술·체육요원 교육일의 연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의무자와의 관계

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